[서식 예] 구상금청구의 소(수탁보증인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구상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기초사실

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소외 ◆◆◆로부터 30,000,000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(갑 제1호증 보증계약서 참조).

- 2. 원고의 대위변제
 - 가. 채권자인 소외 ◈◆◈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20○○. ○. ○.까지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절차개시통지를 하였고

(갑 제2호증 압류절차개시통고서 참조), 피고에게 위 금원의 조속한 지 최고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 최고서 참조).

최고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 최고서 참조).

나.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, 원고는 부득이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20〇〇. 〇. 〇. 금 30,000,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자인 소외

③◆◆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(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

3. 결론

참조).

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대여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게 위 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응하므로, 원고는 대위변제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 다음날인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보증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압류절차개시통고서

1. 갑 제3호증 최고서

1.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○○지방법위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

